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2307
----------	------

2021년 5월 4일
보건복지위원회

I. 심사경과

1.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1년 4월 2일 이병도 의원외 33명
2. 회부일자 : 2021년 4월 6일
3. 상정일자 :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2021년 4월 26일 상정·의결(원안 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 (이병도 의원)

1. 제안이유

- 한문식 표현을 쉽게 풀어쓰며, 다양해진 세대 구성을 조례에 담고자 함.
- 서울특별시 성평등 활동 지원센터 내 성평등 활동지원가의 지원을 강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한문식 표현을 수정함(안 제18조제6호).
- 평등한 가족생활 지원 대상자를 추가함(안 제19조제2항).
- 서울특별시 성평등 활동 지원센터의 기능을 수정함(안 제43조제3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양성평등기본법」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참조).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참조

Ⅲ.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이문성)

1

조례안의 개요

- 동 개정안은 사회·경제적 구조 및 개인의 가치관 변화 등에 따라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가족의 유형에 외국인주민 가족과 1인 가구를 추가하여 서울시 가족정책의 지원 대상을 보다 명확히 하고, 성평등 활동 지원센터의 기능을 센터의 목적에 맞게 수정·반영하려는 내용임.

2

주요사항 검토

□ 가족 유형의 추가 명시(안제19조)

- 개정안은 시민들이 평등한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다양한 가족이 차별받지 않고 필요한 지원을 받도록 하고 있는 현행조례에, 다양한 가족의 유형으로 외국인주민 가족과 1인 가구를 포함시켜 명시하려는 내용임.

현행	개정안
제19조(평등한 가족생활) ① (생략) ② 시장은 <u>한부모가족·장애인 가족·다문화가족</u> 등 다양한 유형의 가족이 차별받지 아니하	제19조(평등한 가족생활) ① (현행과 같음) ② ----- <u>한부모가족·장애인 가족·다문화가족·외국인주민 가족·1인 가구</u> -----

고, 평등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 급격한 산업화와 글로벌화 등 사회·경제적 변화는 개인의 가치관을 변화시키고 이는 가족의 구성과 유형에 영향을 미치며 새로운 형태의 가족을 출현시키고 있음.
- 서울시의 1인가구는 2005년 67만 5,739가구로 전체 가구의 20.4%를 차지하던 것이 2019년 현재는 129만 9,787가구로 전체 가구 대비 33.3%가 1인가구로, 서울시 가족정책의 주요 대상으로 부각되고 있음.

<서울시 1인가구 현황>

(단위 : 가구, %)

구 분	계	1인	2인	3인	4인	5인이상
2005	3,309,890 (100.0)	675,739 (20.4)	670,455 (20.3)	732,043 (22.1)	917,243 (27.7)	314,410 (9.5)
2010	3,504,297 (100.0)	854,606 (24.4)	781,527 (22.3)	788,115 (22.5)	807,836 (23.1)	272,213 (7.8)
2015	3,784,490 (100.0)	1,115,744 (29.5)	930,467 (24.6)	817,440 (21.6)	701,945 (18.5)	218,894 (5.8)
2016	3,784,705 (100.0)	1,138,860 (30.1)	931,262 (24.6)	816,946 (21.6)	686,469 (18.1)	211,168 (5.6)
2017	3,813,260 (100.0)	1,180,540 (31.0)	956,978 (25.1)	813,629 (21.3)	662,920 (17.4)	199,193 (5.2)
2018	3,839,766 (100.0)	1,229,421 (32.0)	977,469 (25.5)	807,545 (21.0)	676,385 (16.6)	187,945 (4.9)
2019	3,896,389 (100.0)	1,299,787 (33.3)	1,005,065 (25.8)	801,819 (20.6)	614,026 (15.7)	177,692 (4.6)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2005~2019)

- 서울시는 2016년 3월 전국 최초로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 가구 지원 기본 조례」를 제정하고, 2019년에는 “1인가구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1인가구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사회적 관계망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통계청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서울시 외국인주민¹⁾ 가구 수는 157,582 가구로 서울시 전체 가구 수와 비교해보면 약 4.1% 정도에 해당하며,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제7조제1항제8호²⁾에 따라 외국인주민 가족에게 평등한 가족 관계 유지를 위한 사업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 이에 조례안에서 다양한 가족의 유형으로 추가 명시한 외국인주민 가족과 1인 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이들을 위한 별도의 정책과 지원이 확대되고 있는 바, 그 개정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임.

□ 성평등 활동 지원센터 기능 확대 등(안제43조)

- 개정안은 현행 조례 제42조³⁾에 따라 설치된 “성평등 활동 지원

1) 서울시에 외국인 등록 또는 거소 신고(90일 초과)를 한 외국인주민

2)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제7조(지원의 범위) ①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7. 외국인주민의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 평등한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사업

3)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제42조(설치) 시장은 시민의 성평등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평등 활동 지원센터(이하 ‘센터’란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센터”의 주요기능 중 하나인 ‘여성시민사회단체 설립에 관한 상담 및 성장 지원’을 ‘성평등활동가의 성장 및 단체 설립·운영 지원’으로 변경하려는 내용임.

현행	개정안
제43조(기능) 센터의 주요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2. (생략) 3. <u>여성시민사회단체 설립에 관한 상담 및 성장 지원</u> 4. (생략)	제43조(기능) ----- -----. 1. · 2. (현행과 같음) 3. <u>성평등활동가의 성장 및 단체 설립·운영 지원</u> 4. (현행과 같음)

- 이는 현행 조례상의 센터 기능이 여성시민사회단체 설립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성평등활동가들에 대한 지원을 포괄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바, 개인을 포함하여 모든 성평등활동가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이와 별도로 성평등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설립과 운영을 지원하는 내용을 명시하여, 성평등 활동 지원센터의 기능을 확대하고 그 내용을 명확히하려는 것임.

<서울시 성평등 활동 지원센터 개요>

구분	내용
소재지	은평구 통일로 684 서울혁신파크 공유동(15동) 6층
개원일	2018.03.27.
위탁현황	<u>(1차) 2017.10.10.~2019.10.10.(2년)</u> (사)여성사회교육원 (대표 : 김희은) <u>(2차) 2019. 10. 11. ~ 2022. 10. 10.(3년)</u> (사)젠더교육플랫폼 효재(대표:조영숙)
소요예산	550백만원('21년)
주요기능	·성평등활동가 성평등·성인지 교육 등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여성시민사회단체 설립과 운영에 관한 상담 및 성장 지원 ·성평등 활동 관련 네트워크(온오프라인) 및 민관협력체계 구축 ·성평등 활동 관련 정보 및 공간 제공

□ 그 외 사항

- 그 밖에 이미 조례 개정을 통해 변경된 용어가 누락된 일부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은, 조문 간 모순이나 충돌이 없이 유기적이고 통일성을 갖추도록 하려는 것으로, 그 입법취지의 긍정성이 크고, 이에 따른 개정내용도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현행	개정안
제18조(일·생활 균형 지원) 시장은 여성과 남성이 일과 생활을	제18조(일·생활 균형 지원) ----- -----

균형있게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 -----.
1. ~ 5.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6. <u>일·가족 양립</u> 에 관한 상담 및 서비스 지원	6. <u>일·생활 균형</u> ----- -----
7.·8. (생략)	7.·8. (현행과 같음)
9. 그 밖에 <u>일과 가족의 양립</u> 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9. ----- <u>일·생활 균형</u> ----- -----

3
종합 의견

- 본 조례안은 가족지원 정책의 대상인 다양한 가족의 유형을 추가 명시하고, 성평등 활동 지원센터의 기능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내용으로,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 할 것임.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없음」

VI. 심사결과 : 원안 가결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병도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2307
----------	------

발 의 년 월 일 : 2021년 04월 02일

발 의 자 : 이병도, 권순선, 권영희,
김경영, 김재형, 김정환,
김제리, 김창원, 김태수,
김평남, 김희걸, 문병훈,
박기열, 박기재, 박상구,
박순규, 서윤기, 성흠제,
송명화, 송정빈, 양민규,
오중석, 이승미, 이영실,
이현찬, 임종국, 장상기,
전석기, 조상호, 채유미,
최 선, 한기영, 황규복,
황인구 의원(34명)

1. 제안이유

- 한문식 표현을 쉽게 풀어쓰며, 다양해진 세대 구성을 조례에 담고자 함.
- 서울특별시 성평등 활동 지원센터 내 성평등 활동지원가의 지원을 강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한문식 표현을 수정함(안 제18조제6호).
- 나. 평등한 가족생활 지원 대상자를 추가함(안 제19조제2항).

다. 서울특별시 성평등 활동 지원센터의 기능을 수정함(안 제43조제3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양성평등기본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참조

다. 기타 : 신·구조문 대비표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6호 중 “일·가족 양립”을 “일·생활 균형”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호 중 “일과 가족의 양립”을 “일·생활 균형”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한부모가족·장애인가족·다문화가족”을 “한부모가족·장애인가족·다문화가족·외국인주민 가족·1인 가구”로 한다.

제43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성평등활동가의 성장 및 단체 설립·운영 지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8조(일·생활 균형 지원) 시장 은 여성과 남성이 일과 생활을 균형있게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야 한다.	제18조(일·생활 균형 지원) ---- ----- -----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u>일·가족 양립에 관한 상담</u> 및 서비스 지원	6. <u>일·생활 균형</u> ----- -----
7.·8. (생 략)	7.·8. (현행과 같음)
9. 그 밖에 <u>일과 가족의 양립을</u> 위하여 필요한 사항	9. ----- <u>일·생활 균형</u> ----- -----
제19조(평등한 가족생활) ① (생 략)	제19조(평등한 가족생활) ① (현 행과 같음)
② 시장은 <u>한부모가족·장애인</u> <u>가족·다문화가족</u> 등 다양한 유 형의 가족이 차별받지 아니하 고, 평등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 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 <u>한부모가족·장애인</u> <u>가족·다문화가족·외국인주민</u> <u>가족·1인 가구</u> ----- ----- -----.
제43조(기능) 센터의 주요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3조(기능) -----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u>여성시민사회단체 설립에 관</u> <u>한 상담 및 성장 지원</u>	3. <u>성평등활동가의 성장 및 단</u> <u>체 설립·운영 지원</u>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문 서 번 호

2021033000000004

미첨부 사유서 (2호)

요 청 인 : 이병도 의원

담 당 : 조도형 과장
이정수 팀장
채소영 주무관

접 수 일 : 2021.03.30

회 신 일 : 2021.03.31

내용문의 : 02-2180-7942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목 차

1. 비용발생 요인
2. 미첨부 근거 규정
3. 미첨부 사유
4. 작성자



서울특별시의회 사 무 처
예산정책담당관
Seoul Metropolitan Council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9조(평등한 가족생활)제2항은 평등한 가족생활 지원대상자에 외국인주민가족을 추가하는 것으로 선언적·권고적인 의미로 볼 수 있으며 기술적으로 추계 곤란
 - 같은 조례안 제18조(일·생활 균형 지원), 제43조(기능)의 경우 한문식 표현을 쉽게 풀어쓰거나, 성평등 활동지원가의 지원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3. 미첨부 사유

- 가. 의안이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제3조제1항제2호)

4.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조도형

정책조사팀장 이정수

주 무 관 채소영

☎ 02-2180-7942

e-mail : liz1998@seoul.go.kr